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73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정진욱 · 박지원 · 장철민
이재관 · 김 윤 · 김문수
민형배 · 안도걸 · 박균택
김승원 · 양부남 · 추미애
이병진 · 채현일 · 조인철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치 않은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수입 · 생산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 폐기 ·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폐기 · 반송 명령 이행 의무자가 소유자에 국한되어 있어 단순 구매자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 · 반송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폐기 · 반송할 수 있는 경우가 소유자가 폐기 · 반송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지 못하고 소유한 선의의 피

해자의 경우 해당 폐기·반송 명령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나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수입·판매자의 경우 소유자 등에게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 추가 및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회수·폐기·반송 명령 등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함과 동시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적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안 제23조의2제4항).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마.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의3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폐기·반송”를 “회수·폐기·반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를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법인을 포함한다)”로, “폐기·반송”을 “회수·폐기·반송”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를 “회수·폐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폐기·반송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

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회수
· 폐기·반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손실보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의 원
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
과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한 손실보상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발생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발생 원인자의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제6호 중 “폐기·반송”을 “회수·폐기·반송”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u>폐기 · 반송</u>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소유자</u>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폐기 · 반송</u> 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u>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 · 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 · 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u>	제23조의2(<u>회수 · 폐기 · 반송</u> --) ① ----- ----- ----- <u>소유자 및 수입 · 판매자(법인을 포함한다)</u> ----- ----- <u>회수 · 폐기 · 반송</u> 을 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u>회수 · 폐기 · 반송</u>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u>회수 · 폐기 · 반송</u> 에 드는 비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u>소유자 및 수입 · 판매자</u> 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u>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 · 판매자가 제1항에</u>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회수·폐기·반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 회수·폐기 -----

-----.

④ 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반송에 드는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손실보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

· 폐기 · 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 · 폐기 · 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

<신 설>

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을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한 손실보상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발생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발생 원인자의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u>폐기</u> <u>· 반송</u>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u>회</u> <u>수 · 폐기 · 반송</u>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